

『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4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
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

- 출연 예정액 : 금13,750천원

- 출연 필요성 :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연구교육컨설팅,

지역홍보센터 설치 운영,

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교육 및 지역인력역량강화 등

- 출연근거법령

•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

•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자치부훈령 제48호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(행정자치부훈령 제48호)

○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엽

○ 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의거 2007년에 행정자치부,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구미시에서 2015년도 출연금(12,500천원) 대비 10% 증액한 13,750천원을 출연하려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「지방재정법」, 「민법」 및 훈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출연 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홈페이지, 서울정부청사 전광판, 지역홍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우리시 지역특산물, 지역축제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